



VII. 행정소송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

1. 행정소송 판례 - 203

2. 행정심판 재결례 - 219

1. 행정소송 판례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관기관으로 이송한 것이 정보공개청구의 부작위가 아님을 확인한 판결 >

사건번호 : 2007구합1569

피 고 : 대통령비서실장

사건개요

- 원고측은 2006.11.24 피고측에 전효숙 전헌법재판관의 사직서의 공개를 요구
- 이에 피고측은 전효숙 전헌법재판관의 사직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로 이송하고, 중앙인사위원회는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를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대통령비서실이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함

< 판결 내용 >

▶ 원고 박○○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 「행정소송법」 제36조는 부작위위법확인 소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바, 원고 박○○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해 사건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각하함

▶ 원고 신○○의 청구에 대한 판단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이를 청구인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사직서 등에 대해서 이를 보유·관리하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이송한 다음 이를 정보공개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한 사실, 이 이송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는 사직서의 내용 및 사표수리일자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였으므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부작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정보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7누5464

피 고 : ○○시장

사건개요

- 원고는 시민단체로서 '05. 12. 10.자 피고에게 '02년 6월부터 '05년 12월(1,2,3월은 제외)

까지 시장·부시장·국장 업무추진비(기관·시책·정원)집행내역 및 '02년부터 '05년까지 업무추진비 편성금액, 사용금액의 정보공개를 청구

- 피고는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05. 12. 21.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공개결정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06. 1. 20.자 ①'02. 6.부터 '05. 12.까지의 업무추진비를 집행 시책, 기관으로 구분 공개하고, ②주요 업무추진비의 현금사용 내역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06. 1. 27 업무추진비를 시책, 기관으로 구분 공개하되, 현금사용 세부내역은 비공개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 결정함

< 판결 내용 >

▶ 원고의 제소 각하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데(대법원 '06.1.13. 선고 2003두 9459판결 참조),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04. 9.부터 '05. 12.까지 피고 및 ○○시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중 현금사용분에 대하여는 수행비서가 경비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등을 제대로 정리하여 담당부서인 ○○시 회계과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회계과에서도 위 서류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공식적인 자료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음
-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임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정보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07구합2464

피 고 : ○○시장

사건개요

- 원고는 2006. 7. 27. 피고에게 지적에 관한 1961. 12. 30자 및 1962. 1. 5자 사무인계서 및 인수서에 첨부된 별책 사본의 공개를 요구 하였으나, 피고는 세계개혁에 수반한 업무이관에 따른 사무인계서 및 인수서 공문서는 불상의 사유로 인하여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음
-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관된 이 사건 자료는 영구보존 문서로써 담당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로 인하여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채 당시 원고들이 입수한 사무인계서 등이 불상의 사유로 인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처분은 정보에 대한 오독 및 판단유탈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하지 않을 수 없어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로 소를 제기함

< 판결 내용 >

▶ 원고의 제소 각하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0두7087 판결, 2005.1.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 갑 제5 내지 1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의 조부 ○○○이 농지개혁법에 따라 1950년부터 1957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사실, 같은 리 146-15 토지의 폐쇄 등기부등본에는 1972. 5. 25 ○○○의 아들인 ○○○ 명의로 1959. 12. 11 상환완료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 ○○계장 ○○○이 원고 ○○○에게 ○○○ 명의의 땅을 찾아주겠다고 말하며 임야조사부를 보여주었고, 그 후 토지대장도 보여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1950년 지적법 제정 당시에는 질권 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서는 토지대장에 그 질권자 또는 지상권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사항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61.12.8 법률 제829호로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토지대장에 기재할 필수사항으로 질권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이 삭제된 사실, 한편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시한 토지대장에는 위와 같은 상환사실이나 ○○○의 명의를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구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토지 내지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소관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토지 내지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기재 역시 증명력이 없는 점, ②원고 ○○○의 조부인 ○○○이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것은 1950년대인데 반하여 일제시대에 작성된 임야조사부를 보여주면서 그 아들인 ○○○ 명의의 땅을 찾아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고, ○○○의 위 진술은 사기미수에 대한 피의사실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은 토지 내지 임야대장에 ○○○ 내지 원고 조상의 명의를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직접적

으로 하지는 않았으며, 고소인인 원고 ○○○도 ○○○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18절지 크기의 서류 중 ○○○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만 보여주었다고 진술한 점, ③1961년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질권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부분이 삭제된 것은 의용민법에서 인정되던 부동산질권이 현행민법에서 인정되지 않게 됨에 따른 조치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고가 제시한 구 토지대장에는 '지상권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을 표기하는 란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④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이관 받은 이후에 이를 새로이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달리 피고가 토지대장을 새로이 작성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업무 이관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의 명의를 기재된 구 토지대장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법 제14조의 '부분공개' 규정에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함은, 그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한 판례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07구합 193호

피 고 : 대구동부중학교장

사건개요

- 원고는 본교 교사로서 2006. 5. 6.자 학교회계지출증빙서 외 26건에 대한 열람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2006. 5. 24 ~ 2006. 6. 14 사이에 열람정보공개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 8. 18. 동 건의 비공개로 판단되는 내용에 대한 사본출력물을 요청한데 대하여 피고는 2006. 8. 28. 거부 처분함
- 행정심판청구(2006. 11. 10.) : 2007. 1. 4. 일부공개결정, 나머지 기각
- 행정소송제기(2007. 1. 25.) : 2007. 12. 12. 원고 기각
- 이에 불복 2007. 12. 27 항소 제기

< 판결 내용 >

▶ 원고의 제소 기각

- 정보공개법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제3호에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6호에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단서 생략)'를, 제7호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단서 생략)'를 각 들고 있음

- 위 각 규정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취지는 국민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임. 그런데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의 기회에 보유하게 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공개한다면 사생활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개인 내지 법인 등의 사생활 및 정당한 이익을 엄격히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및 '법인 등의 경영·영업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금지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다만 당해 정보의 당사자의 사생활 및 영업상의 이익 보호의 필요성에 우월하는 공익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공개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를 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14조에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그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함
- 이 사건 각 정보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항의 정보들은 각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정보들로서 공급자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이사, 주소, 계좌번호를 각 포함하고 있고, 별지 목록 기재 제16항, 제17항의 정보들은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 중 공급자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이사, 주소, 계좌번호와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7호 소정의 각 비공개대상정보인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및 '법인 등의 경영·영업에 관한 정보'에 해당함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학교회계지출에 관한 정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인 원고가 학교회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 하는 반면, 법인의 중대한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한 이 사건 각 정보에서 개인 정보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정보 전부에 관하여 그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특정인의 재산, 사생활의 자유 내지 비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 등의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위법함
- 정보공개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보 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한편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은 “공공 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열람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사건 각 정보에다가 이미 피고가 공개결정을 한 정보 및 행정심판에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인용한 정보들을 포함할 경우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는 그 양이 방대하여 그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를 위해서는 학교의 본래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 방법을 사본 또는 출력물의 방법으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그 공개를 열람의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각 정보를 이미 열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이 사건 각 정보에 관한 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열람의 방법에 의한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열람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본 또는 복제 물의 교부방법에 의한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 청구인의 불복소송 변론종결 전에 공공기관으로부터 사건 정보 일체를 수령하였다면 정보공개여부 결정 및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부작위위법확인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각하한 판례 >

사건번호 : 2007구합4225 정보공개이행

피 고 : ○○지방노동청 ○○지청장

사건개요

- 원고는 2006. 11. 16. 원고가 근무 중이던 “○○○○○○○○”의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취업규칙 및 변경사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2006. 11. 16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고의 이 같은 부작위는 위법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이미 이 사건 정보 일체를 원고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합하므로 각하

< 판결 내용 >

▶ 원고의 제소 각하

- 원고의 2006. 11. 16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고의 이 같은 부작위는 위법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
- 부작위위법확인 소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사실심의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 등을 하게하고 당시 당해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 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0.9.25. 선고 89누4758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이미 이 사건 정보 일체를 원고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임.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으로 함

<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법 제13조 제2항 및 영 제12조 제2항에 의거 우선 열람토록 공개형태를 변경한 처분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한 판례 >

사건번호 : 대구고법 2006누 2115

피 고 : ○○여자중학교장

사건개요

- 원고는 2005. 11. 19. 피고에 제기한 ○○여자중학교의 ①2005년 사업 중 테니스장, 급식소 연결 복도, 교무실 냉·난방기 구입, 급식기구 및 물품구입, 대수선 지출 내역 ②2004년, 2005년 피고의 출장비 지급 내역 ③2004년, 2005년 업무추진비 지출 상세 내역서 ④2004년, 2005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구성과 관련한 서류 일체, ⑤2004년, 2005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5. 12. 8 원고에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사본·출력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고, 2005. 12. 12.부터 같은 달 22.까지 ○○여자중학교 행정실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시청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결정통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청구

< 판결 내용 >

▶ 피고의 항소 기각

- 피고에게 정보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면, 정보공개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률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등 참조)
-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여자중학교의 학생 수, 교직원 수, 행정실 직원 수 등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그 사본 또는 출력물을 교부할 경우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단정

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모두 검토하여 각 정보별 출력 매수까지 파악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정보의 전체 양도 880쪽 정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별도로 정보를 찾아내는데 추가시간이 소요되거나 이를 단순히 복사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방법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 원고에게 이미 이 사건 정보를 모두 공개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원고의 각 집행 내역을 요청한 사실에 피고는 같은 달 21. 수신자를 ○○여자중학교 운영위원장으로 한 2004년 세입·세출 결산 현황표를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당심에서 2004년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서 중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및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각 집행 내역의 정보공개청구 부분을 취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와 원고가 이미 교부받은 위 자료는 그 내용이 대부분 상이하야 일부 일치하는 2004년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서 중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각 집행 내역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미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이미 모두 공개하였고 원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음
- 원고가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피고는, 원고가 ○○여자중학교의 교사이자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이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언제라도 문의하거나 위 정보를 열람함으로써 자신의 알 권리를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음에도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며,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교부받기 위한 원고의 정보 공개청구가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음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전산기기 내에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검색·편집·작성할 수 있는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한 통계자료나 석차 등의 결과물을 검색·편집·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합리적인 노력을 들여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개의 정보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정보의 부존재가 아니라고 한 판례(“정보의 가공 공개 허용 문제”와 관련됨) >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6구합 47759

피 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건개요

- 원고들은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자들로써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법 2005구합9835)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불합격처분의 위법을 입증하기 위해 “취득점수별 분포도”를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요구하였으나, 공단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임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음
- 원고들은 '06.12.13. 피고 공단에 대해 동 정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 공단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임을 이유로 '06.12.14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본 건 소를 제기함

< 판결 내용 >

▶ 원고의 청구 인용

- 현대사회에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관리·보유 중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 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하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 할 것임
- 공공기관이 문서등 유체물의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와는 달리 컴퓨터 등 전산기기에 개개의 정보자료(원 전자정보)를 입력하여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기기의 특성상 개개의 정보자료만 있으면 별도의 통계·분석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쉽게 입력된 개개의 정보자료를 종합적으로 분류하고, 위와 같이 분류된 결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검색·편집·작성할 수 있으므로, 공개 대상정보가 개개의 정보자료를 분류한 결과물일 경우에는 그 자체가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전산기기 내에 작성·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검색·편집·작성할 수 있는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한 통계자료나 석차 등의 결과물을 검색·편집·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합리적인 노력을 들여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개의 정보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언제든지 전산기기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공개대상의 정보인 결과물을 검색·편집·작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사실상 공개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

- 이 사건 정보는 원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시간적·경제적인 부담 없이 합리적인 노력을 들여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편집·작성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이 됨
- 따라서, 원 전자정보를 새롭게 가공 생산해야 비로소 이 사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거나 이 사건 정보를 산출함에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시간적·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지 않음

< 사업지구내 보상관련 정보 중 청구인과 관련된 토지조서, 감정평가내역 등을 제외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05구합 5292

피 고 : 한국토지공사 사장

사건개요

- 원고는 ○○개발사업지구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보상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문서, 협의취득 토지 내역, 이주자택지 가격 및 배정 관련 자료, 토지 조성 원가 산출계획서, 토지공급 가격계획서, 각 토지의 최종 확정된 보상가격, 재결 보상 가격, 사업지구내 피고 공사 직원의 토지 소유 현황의 정보공개를 청구
- 피고는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 중 타인의 보상내역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대상이 아니고, 조성원가 산정자료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비공개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와 관련된 토지조서, 감정평가내역 등을 제외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 처분을 함
-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소

< 판결 내용 >

▶ 원고의 제소 일부 각하, 기각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여기에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당해 정보 자체로부터 개인이 식별되지는 않지만 일반인인 통상 입수할 수 있는 관련 정보와 조합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식별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부분공개 한다고 하더라도 보상대상 재산의 지번 등 물적 정보, 당해 재산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 등이 공개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당해 재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 등 각종 공부에 기재된 인적정보 등을 조합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위 각 정보 전체가 공개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나아가 위와 같이 조합된 정보로 인하여 보상대상 재산의 소유자, 협의보상 여부, 당해 재산의 소유자가 수령한 보상금의 액수 등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
-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서류의 경우, 그 일부에는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한 위 사업지구 보상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로서는 향후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등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이주자택지 가격 및 배정 관련 자료, 토지 조성 원가 산출계획서, 토지공급 가격계획서, 사업 지구내 피고 공사 직원의 토지 소유 현황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 청구자가 비록 조합의 조합원이었다 하여 '타인'이 아닌 직접 당사자나 납세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조합에 부과된 과세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 2006두18232 (2007.2.8.)

피고(피상고인) : ○○지방국세청장

사건개요

- 소외 ○○○이 1994. 0. 00. 피고에게 ○○○의 토지 무상양도와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동 진정내용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통지
- 원고는 위 소외 ○○○의 진정과 관련한 ○○○의 답변문서 등 피고가 조사한 과세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 처분

< 판결 내용 >

▶ 원고의 제소 기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되지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3항은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1항 단서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열거하고 있음
-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보건대, ○○○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양도한 상대방은 재건축조합 등 3개의 조합이므로 과세정보의 직접 당사자 또는 납세자는 위 조합이고, 조합에 증여세 등이 부과되어 원고가 그 조세를 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비록 위 조합의 조합원이었다 하더라도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타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증여세와는 세목을 달리하는 종합토지세가 조합 등에 부과된다는 점만으로 정보공개상 원고를 ‘타인’이 아닌 직접 당사자나 납세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줄 수도 없음
- 그밖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단서에서 열거하는 바와 같은, 과세정보를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참고인 진술조서’가 관련자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수사상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

사건번호 : 대전지법 2007 구합 4409

피 고 :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사건개요

- 원고와 소외 ○○○은 대전지방검찰청 ○○형제○○○○호 사건의 상피의자로 상호 폭행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원고는 “기소유예처분”을, 상피의자 ○○○은 “혐의 없음” 처분을 각각 받았는 바,
- 원고는 소외 참고인 ○○○의 진술이 각 처분의 근거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참고인 ○○○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7. 9. 19. 피고에게 위 사건에 관한 수사기록 중 참고인 ○○○의 진술조서 공개를 요구하였고,
- 피고는 원고에게 참고인 ○○○의 진술조서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수사관이 참고인 ○○○로부터 전화 청취하여 그 진술을 수사보고서에 기재한 것만 있다고 알려 주었는데, 2007. 9. 28.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참고인 ○○○이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공개를 청구함

-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수사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처분 함

< 판결 내용 >

▶ 원고의 제소 인용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공개로 인하여 관련자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정보는 비록 수사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위 수사보고서에는 원고와 상피의자 ○○○ 사이의 폭행사건에 관한 참고인 ○○○의 진술만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참고인 ○○○의 진술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수사상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가 2007. 9. 28. 원고에 대하여 처분한 대전지방검찰청 ○○형제○○○○호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서(제20~51쪽)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교도소 징벌위원회 회의록’의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며, 청구인 자신의 ‘청원조사결과보고서’의 정보는 형의 집행, 교정 등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거나, 의사결정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공개대상이라는 판례 >

사건번호 : 2006누 184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피 고 : 법무부장관

사건개요

- 원고는 2005.11.10. 피고에게 ①“2005. 3. 31.부터 2005. 4. 1.까지 ○○교도소에 대한 감사기록 일체”, ②“원고가 법무부에 청원한 사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2005. 8. 11. 내린 기각통보와 관계된 조사서류 일체”의 공개를 청구
- 피고는 공개 청구한 ①의 정보에 대해서는 미 보유 정보로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비공개하고, ②의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청원관련 서류 중 원고의 진술조서 사본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함

< 판결 내용 >

▶ 원고의 제소 일부인용

-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부분과 공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 ○○교도소 징벌위원회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 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징벌사건 처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
- “청원조사결과보고” 기재 정보들은 청원인인 원고의 주장, 그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자 의견, 원고의 인적사항·죄명·형기 종료일 등이 기재된 수용자 신분카드, 이미 징계절차가 종료된 징계관련 서류, 청원 관련자들의 소명서나 그 소명자료 등으로서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형의 집행, 교정 등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거나, 의사결정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부당함

< 공사가 시행하여 이미 종료된 사업지구 택지개발공사의 분양원가 산출내역 등의 정보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될 경우에도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택지 수분양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의 재산권 등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할 수 없어 공개 대상 정보라고 한 판례 >

사건번호 : 대구지법 2006구합 837, 대구고법 2006누2450, 대법원 2007두12149
피 고 : ○○공사사장
사건개요
- 원고는 ○○지역의 경제정의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로서 2005. 11. 21 피고가 시행한 ○○지구에 대한 택지조성원가 및 감정가, 택지조성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 계약서, 택지매매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
- 피고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2005. 12. 9자로 내부위원 5인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거 세부원가내역은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고, 타사가 당사자인 소송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택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개불가 결정을 내리고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을 통지
- 이에 원고는 2006. 3. 10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제기

< 판결 내용 >

▶ 원고의 제소 일부인용

- 원고가 청구한 ○○지구 택지조성원가(구성항목별 원가산정내역), ○○지구 택지 감정가(용도별), ○○지구 택지조성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내역서, 택지매매계약서 가운데 택지매매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공개토록 한다고 판결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공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해 정보는 피고가 시행하여 이미 종료된 사업지구 택지개발 공사의 분양원가 산출내역 등과 관련된 자료에 지나지 않아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될 경우에도 피고에게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택지 수분양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의 재산권 등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당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결함

2. 행정심판 재결례

<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에 부합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는 재결례 >

사건번호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07-934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7. 7. 18 피청구인에게 기본 항공사진 중 특정년도(1971, 1981, 1982)의 영구보존 지침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07. 7. 27 이 건에 대해 해당지침이 없는 것으로 정보비공개 결정 통보
- 청구인이 2007. 8. 1 비공개 결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서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7. 8. 8 동일한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
- 이에 청구인은 “서울시에서 기존무허가 건물로 관리하는 기준이 되는 자료이므로 영구 문서로 보관관리토록 지침을 자치구에 통보함”이라는 서울시 건축과-3893(2006. 3. 8)의 문서는 피청구인에게 기 통보된 공개문서이므로 행정심판 제기

< 재결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현대사회에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관리·보유 중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하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1.5.13. 90 헌마133결정 등 참조)
-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 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정보공개’의 원칙이라는 제목 하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가 법에서 정하는 소정의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면 피청구인으로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거부할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 하여야 한다.
- 또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

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 및 이송사유를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가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이럴 경우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건축과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했으나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청구한 기본 항공사진중 특정년도(1971,1981,1982) 영구문서로 보관 관리토록 지침“(참고자료) 지침구에 통보함 [서울시 건축과-3893(2006.3.8)와 관련되어 위의 내용에 답변사항임] 이라는 “영구문서로 보관토록 지침”의 내용물은 2006. 3. 8.에 서울특별시 건축과에서 피청구인에게 시달된 공개 가능한 문서이므로 피청구인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내용을 정보공개법에 의거 공개 하여야 할 것이며, 정보의 부존재를 들어 비공개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함

< ‘항공사진 판독 및 현장조사 결과 확인한 건축법 위반행위를 조사결과별 또는 발생형태별로 집계한 결과를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보고한 문서의 기안문과 시행문 또는 구청에서 위반행위를 취합하여 위반행위자들에 대하여 형사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문서의 기안문과 시행문’의 정보는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한 재결례>

사건번호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07-175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6. 12. 29. 피청구인에게 1996년도 제1차에서 2005년도 제2차까지의 항공판독 및 처리조서(동.구청)의 약식현황도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기안문 및 시행문을 정보공개 청구
- 피청구인은 2007. 1. 8 구체적 건물 지번 등이 명시되지 않아 타인의 정보에 해당되고, 00동 175-20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적출되지 않아 작성 보존된 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비공개결정 통보
- 청구인은 2007. 1. 11.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인은 00동 175-20 정보가 아니라 피청구인 관내 전체에 관련된 정보를 요구 하였으며, 1996년도와 2005년도는 준 영구 문서이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가 기록되어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임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서 제출
- 피청구인은 2007. 1. 18. 청구인의 처 소외 000의 001동 175-20호 자료는 당시 항공 사진에 적출되지 않아 보관하지 아니하고, 이해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으며, 항공사진 성과품 및 관리대장이란 매년 항공사진촬영 용역사업 결과 생산되는 사진 필름, 이미지 데이터(CD,DVD), 항공 사진촬영 기록부, 약식현황도 원도 등 판독과 측량업무의 기초자료 인바 공개가 불가하다고 기각 결정 통지

- 이에 청구인은 1996년도 제1차에서 2005년도 제2차까지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동,구청)과 약식현황도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기안문(시행문)의 각각 공문서를 열람 및 복사하게 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 청구

< 재결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가 법에서 정하는 소정의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면 피청구인으로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거부할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함
- 그런데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항공사진 판독 및 처리조서에는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조사 결과 위법건축물로 판명된 건축물의 건축주, 소재지, 위반행위 및 이에 따른 피청구인의 사후처리 결과 등의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약식현황도에는 그 위법건축물의 위치 및 철거예정인지 여부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까닭에 이를 근거로 공개될 경우 건축주의 개인식별 정보가 외부로 누출되고, 건축법 위반행위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나아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이 항공사진 판독 및 현장조사 결과 확인한 건축법 위반행위를 조사결과별 또는 발생형태별로 집계한 결과를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보고한 문서의 기안문과 시행문 또는 구청에서 위반 행위를 취합하여 위반행위자들에 대하여 형사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문서의 기안문과 시행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들에는 건축법 위반행위자별로 집약된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고, 이를 공개할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행위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위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적법함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발언내용으로 발언자를 추측하는 것이 가능하고, 발언내용에 나타난 관계자로부터의 의견청취, 토론과정 등이 공개될 경우 심의업무나 공정성·중립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전부 비공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재결례 >

사건번호 : 서행심 2007-914

피청구인 : 노원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7.5.17.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331421) 처리와 관련하여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의사결정과정의 기록된 회의록이 공개되면 위원회의 독립적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통지함

< 재결 내용 >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절차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준수하는 것으로서 비공개대상이 될 수 있고,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들이나 회의에 출석한 관계인들이 자신의 발언이 공개되는데 대한 부담 등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하는데 지장이 있고,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당사자나 기타 특정 의사에 부합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정한 후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할 것이어서 위 회의록의 공개로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등의 이익보다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현저히 크다 할 것이므로 위 회의록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은 정당할 수 있음
-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더라도 발언내용으로 발언자를 추측하는 것이 반드시 어려운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발언내용에 나타난 관계자로부터의 의견청취, 토론과정 등이 공개될 경우 심의업무나 공정성, 중립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이 그와 같은 토론과정을 알게 됨으로써 보호받는

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됨

<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회의록 및 녹취록의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재결례 >

사건번호 :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07 - 136호

피청구인 : ○○구청

청구취지

- 청구인은 ○○구△△공단 경영지원팀 직원채용 담당자로서 근무하던 중 2006년도에 3차례에 걸쳐 공개채용을 실시하면서 「인천광역시○○구△△공단인사규정」 제9조를 위반하고 규정을 무시한 자체 기준을 정하여 시험을 불공정하게 관리하여 3차례 모두 합격자를 불합격자로,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바꿔놓은 것 등이 적발되어, 2007. 8. 3 공단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로 해임결정 된 후,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공단이사회에서 또 다시 해임 결정이 되어 2007. 10. 2. 최종 해임통보 되었는데, 이에 청구인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생각하여 2007. 8. 20과 2007. 8. 27 등 2회에 걸쳐 공단인사위원회(징계)의결에 대한 회의록과 녹취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비공개결정을 통보 하였으며,
- 그 후 청구인은 2007. 9. 21. 공단이사회 회의록 및 녹취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1) 및 업무추진비 지출현황의 정보공개(청구2)를 추가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인천광역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9조 별표2에 의하여 “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평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들어 정보비공개 결정하였고, 청구취지2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업무추진비라는 불특정하고 애매모호한 자료 요구”라고 하여 2007. 10. 8.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함)을 함

< 재결 내용 >

▶ 청구인의 청구취지1은 기각하고, 청구취지2는 인용

- 먼저, 청구취지 1과 관련된 정보인 “ 2007. 9. 21. 공단 이사회 회의록 및 녹취록 파일”이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건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되, 다만,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상항으로 규정된 정보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을 비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인천광역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인사·징계등과 관련된 심의회의록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 청구인은 ○○구 시설관리 공단의 직원으로 ○○구 시설관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구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동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인을 둘 수 있고 관리인은 지방직영기업의 조직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하도록 되어있는 바 청구인이 ○○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는데 문제를 발견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구 시설관리 공단의 인사위원회의 해임 의결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생각하여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공단이사회가 재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공단이사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록은 이사회에서 안건이 의결되는 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록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징계의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할 것임에 비추어 불 때 공단이사회의 징계의결에 관한 회의록·녹취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 된다 볼 수 있고, 또한 징계권자가 징계를 집행한 때에는 피징계자에게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한 ‘징계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2007. 10. 2. 청구인에게 소청사건결정통지를 하였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인사위원회의 종합된 의견이 전체적으로 반영된 징계의결의 이유와 판단을 알 수 있었던 점, 이와 더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구△△공단이사회 위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이사회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게 되어 인사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점, 그리고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중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정보가 공개된다면 피청구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의 이익과 비공개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청구취지 1과 관련된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음

- 다음으로 청구취지 2와 관련된 정보인 “2007. 1. 19. 이후 업무추진비 지출현황(해당 시설)”을 공개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시설은 ○○구청 청사, ○○문화회관 등 9개 시설로 청구인이 지칭한 “해당시설”이 어느 시설을 특정하는 것인지 또한 누구의 업무추진비인지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업무추진비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는 가능할 것이므로 이를 비공개한 처분은 위법·부당함.

<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결과 통보서’의 정보를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재결례 >

사건번호 :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7-11
 피청구인 :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7. 2.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2004년도 상·하반기, 2005년도 상·하반기, 2006년도 상반기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통보서 원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감사·감독·검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통보함

< 재결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지도점검은 피감기관의 운영상태 등을 감사하여 위법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지도점검 결과를 알아야만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점, 지도점검결과 통보서도 제3자가 아닌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로 한정하고 있어 다른 복지시설의 운영상황이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없어 보이는 점, 비공개 사유로 막연히 감사관련 사항에 해당된다는 개괄적인 이유만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받는 지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통보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현저한 지장을 받는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견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하여 부당함

< 골프장 인가서류 관련,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검토서와 사업계획승인 내역 및 사업계획 승인조건(사업자 통보용)의 정보를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의거 비공개한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재결례 >

사건번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7-06817

피청구인 : ○○도지사

청구취지

- 청구인은 ○○골프장 인가서류 일체 정보공개 요청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일부자료는 도보,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고, 인가서류 일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

< 재결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이 사건 정보에는 ①사업계획서,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 ②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검토서(내부보고용), ③사업계획승인 내역 및 사업계획 승인조건(사업자 통보용)이 포함되어 있음
- ①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 정보는 ○○군 공고에 이미 공개하였고, 청구인도 방문하여 직접 열람하였는바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②, ③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의 청구취지와 주장내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사업부지로 편입된 경위 즉 피청구인이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첨부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서류를 어떤 근거로 관계법령상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승인을 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인바, 청구인이 알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정보는 ②의 정보 중 이 사건 토지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내역이고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내부 검토를 담당한 공무원 및 관계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업무의 공정성이 침해되거나 사업승인 신청기업의 영업상 비밀이나 전문기술이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토지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내역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함

- 그러나 ②의 정보 중 청구인의 토지와 관련한 서류의 검토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와 ③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내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판단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의 정보는 개인적 재산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계약이행증권과 같은 문서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특정인의 영업활동에 이용되어 특정인에게 독점적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한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재결례 >

사건번호 : 경기도행정심판 2007-014. 015. 016. 034

피청구인 : ○○시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2003. 1. 1. 이후 사용승인 된 20세대 미만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정보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2006. 11. 17. 비공개 결정처분 통지

< 재결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하자보수보증증권 제도의 운영목적은 일정 기간동안 발생하는 당해 건축물의 시공 상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이용하여 입주자들이 직접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하자보수보증증권은 계약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당해 건축물의 계약내용(계약명, 하자담보기간, 계약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개인적 재산가치가 화체되어 있는 일종의 계약이행증권과 같은 문서인데 만약 이러한 내용이 공개된다면 특정인의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이나 제3자에게 독점적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결국 이러한 내용들은 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와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비공개하여야 할 정보라고 판단됨

- 따라서, 2003. 1. 1이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 미만)중 정보공개 요구일 까지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에 반환되지 않고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공개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구에 대하여 하자보수금액 및 미 인출 사실이 이해관계인 외의 자에게 알려짐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복합상가 및 아파트 허가와 관련된 심의회 회의록 및 부서협의서, 아파트별 사업승인 조건사항과 각 아파트별 교통영향평가서 조건사항의 정보 공개 여부 : 비공개 >

사건번호 : 경기도행정심판 2007-98
 피청구인 : ○○시장
 청구취지

- 원고는 사업계획서, 회의록 등 복합건축물 건축과정 서류의 정보에 대하여 행정 감시 등의 목적으로 2006. 11. 23. 정보공개를 요청, 피청구인은 2006. 11.27.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부분공개 결정함
- 피고의 부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취지를 오해한 처분이라며 2006. 12. 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12. 20.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부분공개 의결하고, 2006. 12. 21. 정보 부분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

< 재결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 및 공개여부 결정사항(2006. 12. 14)을 구분하여 보면, 복합상가 ○○와 관련, ①사업계획서(배치도, 정면도 포함){공개}, ②도시계획 및 건축심의회 의결서 및 회의록, 사업승인 조건사항{비공개}, ③교통영향평가서 조건

사항(도면포함){공개}, ④실무종합심의회회의록(유관기관 의견서 및 부서협의서){비공개}, ⑤건축허가서 및 허가이행조건{공개}, ⑥옥외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내역{공개}를 들 수 있고, 2006년도 11월 현재 관내아파트와 관련, ⑦사업승인 현황{공개}, ⑧각 아파트별 사업승인 조건사항{비공개}, ⑨각 아파트별 교통영향평가서 조건사항(도면포함){비공개}, ⑩각 아파트별 실무종합심의회 회의록(부서협의록){비공개}를 들 수 있음

-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②, ④, ⑧, ⑨, ⑩, ⑪은 제3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위 정보는 관련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개인정보나 기업체의 경영상의 비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개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 중 ⑪4개 구청별 관내아파트 모델하우스 가설건축물 신고대장에 기재된 내역서는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 중 ⑪을 제외하 나머지 ②, ④, ⑧, ⑨, ⑩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비공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인 바,
- 이 사건 정보 중 ②, ④, ⑩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평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의 규정취지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항목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이에 준하는 일반 행정 운영정보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임
- 이 사건 정보 중 ②, ④, ⑩인 ‘복합상가 및 아파트 허가와 관련된 심의회 회의록 및 부서협의서 등(이하“회의록 등”)’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안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회의록 등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방해하여 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심사에 관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 이 사건 정보 중 ⑧, ⑨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및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며 또한, 같은 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제3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피청구인은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수용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하고 있는바, 이는 법문상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어지지 않더라도 청구인은 건설업체들이 정보비공개 요청이 있다면,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등 그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임
- 피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중 각 아파트별 허가조건 뿐만 아니라 도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각 아파트별 구조설계 및 공사원가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이는 해당 업체가 축적한 설계 및 공사 노하우에 속하는 사항으로 제3자인 건설업체의 비공개요청이 있었던 점, 외부에 공개되어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 당해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정보가 인·허가가 완료된 정보라 할지라도 해당 업체로서 향후 관련 공사를 계속 수행하는 한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라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공개청구 목적인 행정감시 및 알권리 보다 각 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결코 작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이익들을 비교·형량하여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서'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명단'의 공개 여부 : 비공개 >

사건번호 : 충북행심 2007 - 57
피청구인 : 충주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충주시 ○○면 ○○마을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명단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통보를 받음
-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정보공개위원회 심의 결과 기각 처분을 받음

< 재결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환경영향평가서”는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다고 보여 지고, 판례는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은 비공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사업 완료 후 피청구인이 공개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현 시점에서 비공개 결정한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 또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명단”은 이 사건 사업의 성격상 이해관계자의 개입이나 위원의 심리적 부담이 있다고 보여 위원명단 비공개 결정 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함

< 쌀농업직불제 사업과 관련, 마을특성상 필지내역만 공개할 경우에도 개인별 지급내역을 제3자가 상세히 알 수 있으므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한 재결례 >

사건번호 : 충북행심 2007-151

피청구인 : 증평균수

청구취지

- 청구인은 청주에서 거주하며 ○○면 ○○리에 출입경작을 하는 자로서 증평균 ○○면 ○○리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및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하였으나, 상기사업과 관련 마을대표가 사문서 위조로 고소되어 수사 중이란 사유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비공개 처분함

< 재결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마을대표가 수사기관에 고소되어 형사피의자 신분이므로 정보공개 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청구인이 비록 개인별 신상내역을 제외하고 필지별 내역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면 ○○리 마을특성상 필지내역만 공개할 경우에도 개인별 지급내역을 제3자가 상세히 알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됨

<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는 조합의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공개로 인하여 사업추진과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재산상 이해당사자와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하여야 함에도 비공개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재결례 >

사건번호 :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07-16

피청구인 : 천안시장

청구취지

- 피청구인은 2006. 10. 27. 청구인의 “원성동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인 ①재건축 결의동의서, ②창립총회회의록, ③총회참석자 연명부, ④조합장 선임수락서, ⑤사업계획서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 지목, 등기명의자 제외)만 부분공개 하였고,
-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 10. 31.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2006. 11. 7. “원성동 재건축관련” 공개청구는 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기각된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결정 통지함

< 재결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피청구인은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청구인은 정비구역안의 건축물만 소유한 자로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라는 정보공개청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조, 제81조에는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로 재건축사업 시행 관련 자료를 공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원성동 재건축 정비구역안의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아 공람할 수는 없어도 행정 정보공개 청구에 어떠한 자격을 제한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공보공개법’이라 함)』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임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인의 경영·영업상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도정법 제81조,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는 재건축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정관 등, 설계자·시공자 및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계약서, 총회·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약서,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법 제14조에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비공개 대상정보)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은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가 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원성동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 중 1.재건축 결의동의서, 2.창립총회회의록, 3.총회참석자 연명부, 4.조합장 선임수락서, 5.사업계획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비공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임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해당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으로는 법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나 경영방침·신용·경리·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한 재건축 관련 자료는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고도의 전문적이고 특수한 내용으로서 당해 재건축조합의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또한 이 건 정보가 공개된다 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오히려 위 정보들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재건축추진 사업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재산상 이해당사자인 청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 함

< 공무원의 최종학교명 및 전공과목, 보유자격증 및 등급의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재결례 >

사건번호 : 행심 2007-133호

피청구인 : 전주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7. 4. 9. 피청구인에게 ○○시 주택행정과 공동주택담당자, 담당, 과장의 고등학교를 포함한 최종학교명 및 전공과목,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보유 자격증명 및 등급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공무원의 최종졸업학교 및 전공, 보유자격증 및 등급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제3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통보함

< 재결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의 ○○시 주택행정과 공동주택담당자, 담당, 과장의 고등학교를 포함한 최종 학교명 및 전공과목,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보유 자격증명 및 등급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음

<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재결례>

사건번호 : 경북행심 2007-156

피청구인 : 영천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6. 10. 19. 및 2007. 1. 12, 2007. 5. 25. 등 세 차례에 걸쳐 2006년도 영천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 청구
- 이에 피청구인은 2006. 10. 19. 정보공개 청구 건은 영천시 ○○동 폐기물소각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2006. 10. 12. 고소한 상태에 있어 '영천시 피고소인'으로 정보 공개를 할 경우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2006. 10. 30. 비공개결정 통지처분을 하였고, 2007. 1. 12.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

해서는 연도폐쇄기인 2월말이 지난 후 결산하여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 이라면서 비공개 결정통지 처분을 하였으며, 2007. 5. 25. 정보공개 청구 건은 피 청구인이 선거법 등 관련하여 대법원에 재판 중에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2007. 6. 12. 비공개 결정함

< 재결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조(목적), 제3조(정보 공개의 원칙),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에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피청구인의 2006년도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대상 범위에 해당되어 공개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2007. 5. 25. 정보공개 청구한 건에 대해 피청구인 이 선거법 등 관련하여 대법원에 재판 중에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2007. 6. 12. 이 사건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처분을 한 것은 여타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널리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위법·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이 사건 피청구인의 2006년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정보공개 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

< ‘국·공유지 목록’의 정보가 부동산 투기·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고, 국공유지 목록을 이용하여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점을 들어 비공개한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재결례 >

사건번호 : 경남행심 2007-203

피청구인 : ○○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열린정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open.go.kr>)를 이용하여 2007. 7. 10. ○○시 ○○면 내의 국유지(잡종지) 현황 및 목록과 ○○시의 국유지(잡종지) 현황 및 목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재차 2007. 7. 12. ○○시 ○○면(○○리, ○○리, ○○리, ○○리) 내 사유지, 도유지, 국유지 목록을 청구하였으며, 2007. 7. 13. ○○면 ○○리, ○○리, ○○리의 사유지 정보를 중복하여 청구하면서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시의 사유지 정보를 공개청구 함
-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당해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함

< 재결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는 ①○○시 ○○면 내의 국유지(잡종지) 현황 및 목록과 ○○시의 국유지(잡종지) 현황 및 목록, ②○○시 ○○면 내 사유지, 도유지, 국유지 목록, ③○○면 ○○리, ○○리, ○○리의 사유지 정보인 바, 청구인의 정보 공개 청구내역을 살펴보면, 정보공개 요청하는 자는 청구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확정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복자료를 요구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 청구대상이 된 국·공유지 목록은 소재지, 지번 등 개별적인 재산명세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국공유지 목록을 이용하여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견 정보 비공개 결정으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 결정함

< '공장설립 승인 서류'의 정보의 공개로 인해 청구자가 얻는 이익보다 비공개로 보호되는 제 3자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하여 비공개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재결례 >

사건번호 : 경남행심 2007-270

피청구인 : ○○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7. 9.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인 △△리 1396-10번지를 경유하여 진출입 하는 △△면 △△리 1397-2번지 등 총 8필지의 공장들의 공장설립승인 서류 중 진입로와 관련된 서류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9. 19. 청구인에게 진입로와 관련된 서류 도면 3장을 공개하는 정보공개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공개내용이 미흡하여 2007. 10. 4. △△면 △△리 1397-2, 1408, 1435-1, 1432-2, 1413-2, 1412-3, 1412-10번지 등 총 7필지의 공장허가서류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함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7. 10. 23. 청구인에게 △△리 1396-10번지 진입도로 관련 서류는 이미 공개하였고, 현황도면 이외에는 1396-10번지 도로와 관련된 서류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공장설립 승인 서류는 개인 및 회사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공개의 필요성이 없으며, 제3자인 공장사업주의 비공개 요청에 의하여 비공개 한다는 내용의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함

< 재결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이 공개 요구한 △△리 1397-2번지 등 7필지 6개 공장의 중소기업창업사업 계획 승인서류 등에는 이 사건 도로부지와 관련된 서류는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현황도면 외에는 존재하지 않고,
- 다른 내용의 자료는 제3자인 공장의 사업주나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공장의 사업주나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 제3자인 주변 6개 공장의 사업주 및 법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고, 공개로 인한 청구인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제3자들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관련 서류 일체를 공개하더라도 청구인이 알고자 하는 이 사건 도로부지의 농지 전용 여부 및 사도개설 여부 등은 알 수 없어 공개의 실익이 거의 없는 반면 제3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부분 공개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임

<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하더라도 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부분공개 하여야 할 것이고, 부분 공개하더라도 청구자의 청구취지 및 공개의 실익이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부 비공개가 가능하다는 재결례 >

사건번호 : 경남행심 2007-305

피청구인 : ○○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시 ○○동 74-17번지에 거주하는 자이고, 연접한 74-16번지 및

74-18번지 건물의 위법사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조치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7. 9. 00. 위 지번상의 건물이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지 관계 법조문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공문으로 회신하여 줄 것과 피청구인의 담당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조치한 내용과 문서를 복사물로 공개해 달라는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의 내용 전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2명의 제3자가 모두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함에 따라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정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2007. 10. 00. 이의신청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7. 10. 00.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기각 결정을 하여 2007. 10. 00.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비공개) 결정 통지함

< 재결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청구인이 요청한 ○○시 ○○동 74-16번지 및 74-18번지상의 건물이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지 관계 법조문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공문으로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실체가 존재하는 기록된 사항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인 정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임
- 이에 비해 피청구인의 담당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조치한 내용과 문서를 복사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은,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를 들어 비공개한 점 등을 살펴볼 때, 해당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개청구의 대상에 해당되는 정보라 할 것임
-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 ○○동 74-16번지와 74-18번지상의 건물의 소유주에 관한 사항과 위 건물이 관련 법률에 위반한 사항, 그리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 것으로, 우선 소유주에 관한 사항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볼 수 있으나, 그 외 위 건물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사항은 「건축법」 제69조 제4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보이고,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한 사항 역시 비공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행정청이 보유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으로 비공개 하도록 하고 있는 점, 그리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비공개 정보가 혼재할 경우에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가리고 공개 가능한 부분만 공개하더라도 청구자의 청구취지 및 공개의 실익이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부 비공개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청구인이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의견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한데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 공개 하여야 할 것임.

< 정보공개법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안에 대하여 민원사무법 등 개별법의 규정에 의거 종결(반복 및 고질민원)한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한 재결례 >

사건번호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07-931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7. 7. 16.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당시 주택과장이던 ○○○씨가 결재한 “주택 58550-4531(2003.11.21)호” 문서의 목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7. 7. 27. 이 건에 대해 반복 및 고질민원으로 종결 처리한 사항이므로 정보비공개 결정 통보
- 청구인은 2007. 8. 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비공개결정 사항이 이의가 있다고 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7. 8. 8.에 동일한 사유로 비공개 결정 통보
- 청구인은 공문서의 내용공개가 아닌 ‘고질민원에 대한 관련 근거’ 라는 내용물의 공문서를 열람과 복사케 하라는 취지로 행정심판 청구

< 재결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일부 인용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법’이라 함)』 제2조 제1호는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동법 제2호는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민원사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동법 제3조(적용범위) 제1항은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구한 사항을 민원사무법 및 구청장 지시사항에 의거 종결(반복 및 고질민원) 한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처분이라 할 것이다.

-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내용이 “주택과-5743(2005.5.23)접수 정보공개 청구민원처리(내부결재) 주택과58550-4880(2003.11.15)호로 반복 및 고질민원 사항으로 종결된 점 등을 감안, ‘민원사무법시행령 제22조등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 민원회신은 생략하고, 위 규정에 따라 향후 동일 민원 청구 시 회신 불가능함을 통보 처리하고자 합니다.’라고(000) 주장함에 대한 공문서의 내용공개가 아닌 ‘고질 민원에 대한 관련근거’ 라는 내용물의 공문서를 열람과 복사케 하라”에서 보듯이 청구내용이 방대하고 청구내용 중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내용이 항목별로 몇 가지 내지는 수십 가지의 문서를 포함하고 있어 그 분량의 방대한 규모에 이르고 있고 그 세부적인 문서마다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개별적, 세부적으로 분리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 피청구인은 청구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청구인에게 청구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부적법한 처분이라는 재결례 >

사건번호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07-933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7. 7. 16. 피청구인에게 001동에서 작성한 1985년도 제1차 향측판독 및 처리조서(동) 사본의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 2007. 7. 27. 이 건에 대해 청구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여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보
- 청구인은 2007. 8. 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비공개결정 사항이 이의가 있다고 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7. 8. 8.에 동일한 사유로 기각결정 통지
-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 1998나54641호 손해배상 [서북정일 58550-2528(2000. 11. 23)] 재판부에 제출한 복사 내용물중 6개 항목의 정보를 열람과 복사케 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 청구

< 재결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일부 인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청구인에게 구체적이 될 수 있도록 청구내용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청구내용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부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임
-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내용이 “가.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 1998나54641호 손해배상 [서북정일58550-2528(2000.11.23)] 재판부에 제출한 복사내용물 중 ①“1985년도 제1차 향측판독 및 처리조서(동) 나. 위의 사항인 보존기간이 지난문서로서 문서폐기가 되었다면 폐기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이 있을 것이므로 재판관련 제출된 서류의 ②보존기간이 몇 년인가 ③본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행정재판이 언제 끝났는가. ④공무원 누가 ⑤언제 폐기심의를 거쳐서 폐기 되었는지 답변 및 관련근거다. 폐기하였다면 문서목록을 작성되어 보관관리하고 있을 것이므로 기 작성되어 보관관리중인 관련근거로 ⑥ 폐기목록을 각 열람과 복사 하게하라.”에서 보듯이 청구내용이 방대하고 청구내용 중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을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내용이 항목별로 몇 가지 내지는 수십 가지의 문서를 포함하고 있어 그 분량이 방대한 규모에 이르고 있고 그 세부적인 문서마다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개별적·세부적으로 분리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임

<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고 하여 공공기관이 이에 기속되지 아니하므로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한 것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재결례 >

사건번호 : 경남행심 2007-123

피청구인 : ○○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6. 12. 12.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652 도 1,891㎡(이하 '사건 제1토지'라 함)가 3필지로 분할되고, ○○시 ○○면 ○○리 652-1 전 236㎡(이하 '사건 제2토지'라 함)가 용도 폐지되어 개인에게 불하된 이유와 결정절차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피청구인은 2006. 12. 20. 청구인에게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을 이유로 비공개결정 통지를 한 후 다시 2006. 12. 21. 청구인에게 사건 제2토지가 개인에게 매각된 이유와 결정절차 등을 요약하여 회신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7. 1. 19. 피청구인에게 사건 제1토지가 사건 제2토지 외 2필지로 분할되고 사건 제2토지가 개인에게 매각된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에 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함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사건 제2토지의 매수자인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따라 정보비공개 결정을 함

< 재결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청구인이 2007. 1. 19. 피청구인에게 공개 요구한 사건 제1토지의 분할 및 사건 제2토지의 용도폐지 및 매각관련 자료는 당해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뿐 아니라
-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해당 정보에 대한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고 하여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견에 기속되지 아니하므로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한 것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임
- 다만, 사건 제2토지의 용도폐지 관련내용(이유와 결정절차 등)은 그 대상인 관련 서류가 문서보존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여 폐기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